

20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경진대회 개최 공고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의 외국인 기술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창업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지원내용

- '15년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참가지원 및 상장 및 부상, 창업교육 등 제공

☐ 주최 및 후원

- (주최)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이민센터
- (후원) 중소기업청, 법무부

☐ 시상규모 : 5개* 내외 창업팀 발굴·시상

* 단,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최종 선정팀 수는 변동가능

구분	선정팀 수	수상자 지원사항
대상	1	① 2015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中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우선 선정 ② 부상 지원(태블릿 PC 등) ③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연계 창업교육 등 지원 ④ 창업비자 발급을 위한 OASIS* 프로그램 점수인정
금상	1	
은상	1	
동상	2	

* [참고] 법무부 창업비자 점수제(⑤발명·창업대전(OASIS-6) : 25점)

* [붙임 1.] '14년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15년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참가 시 관련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2. 신청안내 및 지원제외대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10월 15일(수) ~ 11월 13일(목), 16:00 까지

* 신청기간 이내 이메일 접수 분만 유효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lobal@kised.or.kr)

- 제출서류 : ①경진대회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증빙자료(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비자 등))사본,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일 경우 사실증명원), 학위증명서 등) ②사업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구분	목 록	
공통 (팀원 포함)	- 신분증(여권 및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소지자 : 국내거소사실 증명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외국인 학위 증명 (팀원 제외)	
예비 창업자 (팀원 포함)	- 사실증명원 (폐업사실 확인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단,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자 및 비자 미 발급자 제외)	
기창업자 (‘14.1.1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명 준수하여 이메일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신청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파일명 : 대표자이름_제출서류 번호)

* 참가신청서 상의 팀원도 ①의 증빙서류 필수제출, 미제출시 평가 제외

□ (신청자격) 국내외 재외동포^① 또는 외국인^② 중 예비창업자 및 '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 (팀원 포함)

대상	대표자 신청자격
재외동포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가점사항) 내국인 고용유도 및 국내에서의 원활한 창업활동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가점 부여
 - 서류평가 : 내국인*과 팀을 결성한 경우 (2점)
 - * 단, 내국인은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발표평가 : 한국어로 발표하는 경우 (2점)
 - * 단, 발표평가는 반드시 대표자가 참석, 발표를 진행하여야함
- (지원업종)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

□ 지원제외 대상

- 경진대회 신청 전 또는 대회 운영기간 중 법무부의 신원조회 결과 범죄 경력 등의 사실이 조회 된 자
- 경진대회 신청 전 또는 대회 운영기간 중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붙임 2.]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경진 대회 운영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할 수 없거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어 국내 체류기간 등에 제약이 있는 자
- 기타 창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평가 및 선정절차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평가 (국문, 영문)	☐ 20팀 내외	멘토링 캠프 사업계획 1:1멘토링 (한국어, 영어)	☐ 20팀 내외	발표평가 (한국어, 영어)

* 선정 절차(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 (1단계 서류평가) 창업팀의 준비 및 아이템의 우수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국문, 영문 中 선택 작성)

- 가점사항 : 내국인 고용유도를 위해 내국인*과 팀을 결성한 경우 (2점)

* 단, 내국인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2단계 멘토링캠프)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성·의지·역량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1:1 멘토링 실시 (한국어, 영어 中 선택)

* 멘토링캠프는 평가 과정은 아니나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는 과정이므로 신청자(대표자) 불참 시 외국인 경진대회 참가 포기로 간주

○ (3단계 발표평가) 멘토링캠프를 통하여 반영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 실시

* 단, 발표평가는 반드시 신청자(대표자)가 참석, 발표를 진행하여야 함

- 평가방법 :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10분)과 질의응답(7분)형태로 팀 별 20분 내외의 발표평가 진행 (한국어, 영어 中 선택)

- 가점사항 : 국내창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중요함을 전제, 한국어로 발표하는 팀에 한하여 가점 반영(2점)

* 멘토링캠프 종료 후 5일간 발표 평가자료(PPT, 멘토링캠프 종료 후 창업진흥원에서 해당 양식 배포예정) 작성 및 제출

○ (최종선정) 발표평가 점수 합산 결과 상위 순으로 5팀 내외 선정

4. 시상 및 후속지원 사항

□ (시상내용) 발표평가 후 점수 순위 별 상장 및 부상 수여

구분	선정팀 수	수상자 지원사항
대상	1	① 2015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中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참가 우선 선정 ② 부상 지원(태블릿 PC 등 상의 훈격 별로 차등 지원) ③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연계 창업교육 등 지원 ④ 창업비자 발급을 위한 OASIS* 프로그램 점수 인정
금상	1	
은상	1	
동상	2	

* [참고] 법무부 창업비자 점수제(⑤발명·창업대전(OASIS-6) : 25점)

□ (지원내용) 차년도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참가지원, 상장 및 부상 지급, 창업 교육 및 창업비자 발급 점수 등 연계지원

○ (차년도 사업참가지원) 수상자는 '15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우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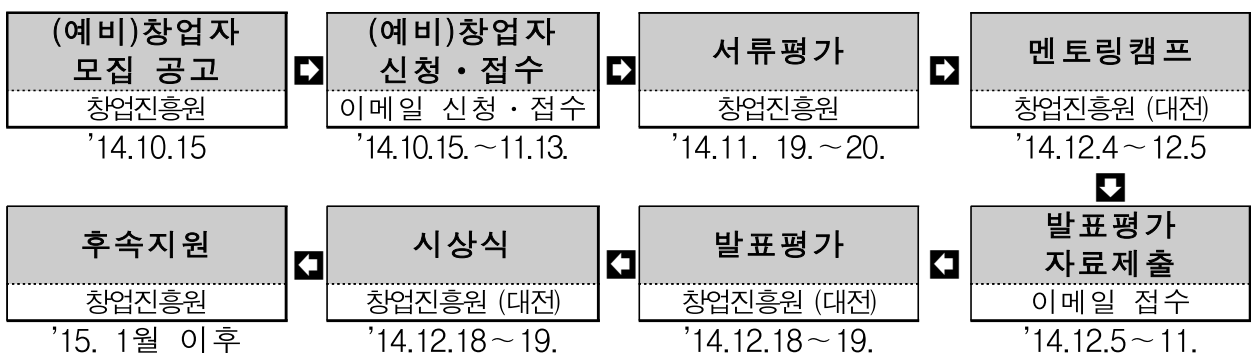
○ (창업교육 지원)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 캠프 등의 창업 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원

* 한국기술벤처재단, 광주과학기술원

○ (창업비자 점수제)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는 법무부지원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업비자 점수 인정

* [참고] 법무부 창업비자 점수제 (⑤발명·창업대전(OASIS-6) : 25점)

5.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및 입상

- 본 경진대회(시상식 포함) 참가를 위한 해외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및 일체의 체제비 및 교통비 지원 없음
- 본 경진대회(시상식 포함)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선정 절차 (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중요사실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서 상의 '대표'는 동 프로그램 참가상의 팀 대표를 의미하며 경진대회 참가 수상자는 '15년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에서 대표직을 유지하여야 함
 - * 단, 팀원은 동 프로그램의 여건을 충족하는 한 변경 가능
- 경진대회 참가 수상자가 '15년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참가 할 시, 신청서 상의 '창업과제-아이템'은 변경이 불가함
- 신청서 상 '팀원'의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시 평가 제외함
- 본 경진대회 수상자는 부상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의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출신국가 별 조세협약에 의거, 관련세금 비율이 상이하므로 향후 수상자 관련 내용 안내 예정

□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

- 수상자는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사업 관련 유의사항 및 향후 안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함을 전제함

* [붙임 1.] '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개요

- 수상자는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이나, 지원제외 대상의 해당사항 발생 시 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됨
- 수상자가 '15년 이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수행자 포함)일 경우,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은 지원제외 대상이나 창업비자 접수 및 교육 등은 지원
- 수상자가 '15년 이전 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 수혜자(수행자 포함)로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에 참여 시,
 - 기 수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단, 수행자는 기 수혜 사업 포기 시 정부지원금 지원
- 수상자는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수행 중(협약일~협약종료일) 타 창업지원사업(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중복 수혜(동시 수행) 불가

☞ 본 프로그램의 선정(수상)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수상) 취소 및 향후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1~4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5, (광주과학기술원) (062)715-2593

- 창업비자관련 문의

- 법무부 체류과 (02)2110-4068

참고 법무부 창업비자 점수제

< 참고 사항 >

▶ 기술창업비자 요건

가. 대상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나. 허가 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34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함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법무부 기술창업비자 점수제

○ 필수항목 및 점수(210점) : 1개 이상 필수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⑤, ⑦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각 25

○ 선택항목 및 점수(130점)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 이상	박사학위 소지	토픽3급↑ 또는 KIIP이수
배점	각 25	각 15	15	10	10

<범례> :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 (OASIS-6) 1~3위 입상,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 OASIS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참고>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붙임 1

2014년 글로벌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 지원내용 및 창업팀의 의무사항

○ 멘토링과 기술·경영, 마케팅 지원

창업교육*	창업기본교육	출입국 관리 법령 및 규정 이해, 창업지원 관련 법률 등
	역량강화교육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소비자 반응조사, 투자유치, 제품인증 지원, 전시회 지원, 디자인 지원 등

* 최종 선정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 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지원 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000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 이내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단, 시제품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분야로 지원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의무)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협약종료 3개월 전 내국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

-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자(본인명의)를 유지하여야 함

붙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 조 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붙임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09년 ~ '15년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청년창업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획사
* 상기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는 경진대회 참가는 가능 하나 '15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에 참여 불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_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 참가신청서

창업아이템명							
신청구분 ²⁾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분야구분 ¹⁾		☐ 제조 ☐ 지식서비스	
				창업(예정)일 ³⁾		년 월 일	
기술분야 ⁴⁾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대표자 현황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한국어구사여부		☐ 상 ☐ 중 ☐ 하	
	비자번호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소속 ⁵⁾			휴대전화			
	이메일			유선전화			
	주택주소						
팀원 현황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한국어구사여부		☐ 상 ☐ 중 ☐ 하	
	비자번호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소속 ⁵⁾			휴대전화			
	이메일			유선전화			
	주택주소						
기업 현황 ⁶⁾	기업명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백만원	
	전화번호			팩스			
	종업원수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등 명	합계 명		
	소재지	(우)[-]					
최종학력	기간		학교명	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전공	학위	
	부터	까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 (대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창업진흥원은 20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업진흥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담당부서(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 시, 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격 검토(개인 채무 불이행여부, 범죄사실 유무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평가진행, 시상, 시상 후 후속지원,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비자종류(체류기간 포함),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자택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기업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소속 및 직위, 특허 등 지재산 등록사항, 신청과제(아이템)명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경진대회 후속지원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동 프로그램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창업진흥원은 20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운영을 위해 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격 검토(개인 채무 불이행여부, 범죄사실 유무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평가진행, 시상, 시상 후 후속지원,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창업진흥원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주관기관(위탁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개인 채무 불이행여부, 범죄사실 유무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평가진행, 시상, 시상 후 후속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업)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복지원 및 사업운영 관련 내용 검토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프로그램 운영 등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비자종류(체류기간 포함), 신청과제(아이템)명, 신청과제내용 등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필요한 항목
-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과제(아이템)명, 신청과제내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기업청 및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경진대회 신청일로부터 '15년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협약 완료 시까지(해당자에 한함)
- 주관기관(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경진대회 시작일로부터 경진대회 종료일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경진대회 신청일로부터 '15년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협약 완료 시까지(해당자에 한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날 인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_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제출 증빙서류 안내

- (제출서류) ①경진대회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증빙자료(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예비창업자일 경우 사실증명원), 학위증명서 등)) ②사업계획서

- * 파일명 준수하여 이메일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신청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파일명 : 대표자이름_제출서류 번호)
- * 참가신청서 상의 팀원도 ①의 증빙서류 필수제출, 미제출시 서류탈락 조치
- * 서명은 반드시 직접 날인하여 스캔 후 송부

<제출 증빙서류>

구분	목 록		비 고
공통 (팀원 포함)	- 신분증(여권 및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소지자 : 국내거소사실 증명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외국인 학위 증명 (팀원 제외)		필수
예비 창업자 (팀원 포함)	- 사실증명원 (폐업사실 확인 및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단,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자 및 비자 미 발급자는 제출 제외)		
기창업자 (‘14.1.1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가점사항) 내국인 고용유도 및 국내에서의 원활한 창업활동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가점 부여

- 서류평가 : 내국인*과 팀을 결성한 경우 (2점)

* 단, 내국인은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증명(외국인_대표)

외국인등록번호 및
발급비자 형태 및 체류기간 등이 보이도록
앞 뒷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삽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증명(외국인_탐원)

외국인등록번호 및
발급비자 형태 및 체류기간 등이 보이도록
앞 뒷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삽입

탐원이 외국인이 아닐 경우 신분증 앞 뒷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삽입

학위 증명(외국인)

이미지 삽입

※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_대표)

이미지 삽입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발급 불필요)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_팀원)

이미지 삽입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발급 불필요)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_대표)

이미지 삽입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불인정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_팀원)

이미지 삽입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불인정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사업자)

이미지 삽입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불인정,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이미지 삽입

※ 공고일(14.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제한분량(10페이지 내외)에 맞게 작성 요망(글자크기 12)
2. 국내외 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등의 내용을 1page이상 단순 복사하여 붙여진 경우 등
관련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함
3. 작성항목 하단의 작성예시(파란 색, 이탤릭체)는 삭제하고 제출

사업계획서 이미지삽입란에 첨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_외국인 기술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창 업 아 이 템 명

1. 요약

창업아이템의 소개	· ·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 · ·

이 미 지

* 시제품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2. 창업배경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서술

3. 창업아이템 개요 및 시장조사결과

☐ 창업아이템의 개요

창업아이템의 개발이유, 용도, 수요자, 사용처 등 창업아이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

☐ 시장 수요조사 결과

국내 목표시장, 대상 소비계층과 그에 따른 매출발생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서술
- 시장 수요조사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

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기존에 유사 기술 존재 여부 및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창업아이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창업아이템(기술)이 가진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5.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 창업 계획

창업일정 및 형태, 창업 이후의 중장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계획

창업아이템(기술)의 시제품제작 계획을 협약기간 내 일정, 소요비용, 세부제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시제품 제작계획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비 고
예시) 아이템설계 및 디자인											
아이템개발(외주용역 등)											
제품 테스트 및 시험분석											
시장반응평가											
마케팅 등 홍보											

☐ 생산 계획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양산 계획 등 서술

☐ 홍보 및 판매전략

예상 제품 단가(판매단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전략(마케팅 계획), 손익분기점 등을 서술